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울진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 ○ ○ 과	□□도로(□□ ○○○호)확장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2	○○○○○ ○ ○ 과	□□□ □□사업 외 1개 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3	○○○○○과	□□□□□□□ □□사업 외 1개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4	○○○○○과	□□□□□□ □□□□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5	○○○○○ 사 업 소	□□ □□□□□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6	○○○○○ 사 업 소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
7	○ ○ 과	울진군 □□□□ □□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호) 확장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진군 ○○○○○○○과에서는 “□□도로(□□ ○○○호) 확장포장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7. 4. 6. ‘(주)■■■■ ☆☆☆’과 계약하고 2018. 4. 11 준공예
정으로 도로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군계획시설사업(농어촌도로) 추진 부적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
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8조에는 제7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해의 도로사
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하며,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의 규정에는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등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공사완료 공고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울진군 ○○○○○○○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도로 등 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협의, 지형도면등 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완료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 시행 및 준공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실시설계용역 재추진

당초 본공사 2015. 2. 25일 부터 2015. 5. 27까지 도로확장 L=2.2km, B=6.0m계획으로 용역비 19,700천원(제경비포함)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7. 4. 6 (주)■■■■과 계약하고 2017. 4. 12 공사에 착공 하였다.

그러나 공사 착공후 도로 폭을 B=6.0m에서 B=8.0m 확장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68,253천원(제경비 포함)을 투자하여 2017.12. 8일부터 2018. 4. 6까지 도로 폭을 B=8.0m로 확장하는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투자한 실시설계용역비 19,700천원을 사장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로확장포장공사를 실착공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가. 토석관리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2012. 6. 21.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울진군 ○○○○○○○과에서는 “□□도로(□□ ○○○호) 확장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11,958m³의 토석자원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L=2.0km거리의 사토장으로 사토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 토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나. 절토사면 녹화공법 부적정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 비탈면 안정공에 따르면 비탈면보호공은 현지 비탈면의 지형 및 지질, 토양조건, 경사, 방향, 강우량,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공법을 선정,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현지에 잘 부합하는 식생 보호공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에는 깎기부

비탈면 토질특성이 밭파암일 경우 5~15cm, 리핑·풍화암일 경우 5cm 미만, 토사일 경우 2cm 미만의 식생기반제 뽑어붙이기 공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절토사면이 리핑암일 경우 10cm, 풍화암에는 5cm 미만의 식생기반제 뽑어붙이기 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한데도 리핑암의 경우 T=15cm로, 풍화암의 경우 T=10cm로 과다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62,224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에서 당초의 실시설계용역비 19,700천원을 낭비 하였을 뿐 아니라, 총 사업비 62,224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62,224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사업』의 1개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진군 ○○○○○○○○○과에서는 “□□□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7. 2. 13 ‘■□■□(주) ☆☆☆’과 계약하고 2019. 2. 16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7조 제4항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토지 등 보상물건의 보상 진척상황, 현장여건, 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는 경우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전체 부지의 보상지연이 충분히 예견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일정 재검토 없이 착공계를 수리하였다.

이로 인해 2개소의 공사가 시공중지 되어 현재까지 실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를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2. 하도급 계약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6-679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

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 정비사업”의 경우 수급인인 ◆◆◆◆(주)에서는 하수급인인 (주)■□■□과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2017. 9. 7.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원가계산에 산정하여 제출 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검토·수리 하는 등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3.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가.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기존구조물 깨기공은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깨기 등 총 2,303m³의 기존구조물 깨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단가산출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 브레이카+굴삭기(0.7m³)로 기존구조물을 깨고 굴삭기(무한궤도 0.7m³)을 이용하여 들어내기를 실시한 후 다시 굴삭기(무한궤도 0.7m³)을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 트럭에 상차하는 것으로 단가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구조물 깨기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깨기 후 폐기물 운반트럭에 곧바로 상차 처리함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데도 폐기물 상차를 별도 반영하고서도 불필요하게 들어내기 공종을 별도 중복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11,491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또한 위 공사에서는 시공상세도작성비 및 시공측량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사비 42,038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53,529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올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53,529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사업』 외 1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진군 ○○○○○과에서는 “□□□□□□□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6. 6. 29 ‘■ ■ ■ ■ 주 ☆ ☆ ☆’과 계약하고 2019. 2. 2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총 2건의 해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 □□사업 추진 부적정

가. 세륜세차시설 설치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시에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차량속도의 규제,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차량 덮개설치 등으로 저감 시키는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공사에서는 장비의 가동 및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1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세륜세차시설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보전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내역에 41,700천원(제경비 포함)이 별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지급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약정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 등 6개 정산항목은 [표2]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정 산 항 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6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울진군 ○○○○○과에서는 위 공사의 퇴직공제부금 등 6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39,350천원(1차 ES 20,050, 2차 ES 19,300)을 과다계상하였다.

2. ◇◇◇◇ ◇◇◇◇◇ ◇◇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요율을 반영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내역서에 반영된 수중조형물 등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

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가 아닌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고 현장설치도인데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나누어 원가계산 불필요한 제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공사비 113,191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반영 되어있다.

그 결과 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194,241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194,241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진군 ○○○○○과에서는 “□□□□□□ □□□□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7. 12. 27. ‘■ ■ ■ ■ ■ ■(주) ☆ ☆ ☆’와 계약하고, 2019. 8. 25.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

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원재료 운반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운반비, 외주가공비, 기계경비, 가설비 등은 경비항목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비의 세비목으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고,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본 공사에서 가도조성에 필요한 원재료(골재 25,718m³) 운반비 및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강교자재(759.503ton) 운반(대리점→공장), 강교(700.741ton) 운반(공장→현장) 등에 대하여는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운반비를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제경비 118,703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2. 석면 슬레이트 철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건축물 슬레이트 등 철거·해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 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 등 철거시 발생하는 폐석면은 폐기

물관리법상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가옥철거에 따른 석면 스테이트(지붕) 508㎡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철거하도록 해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계약자는 등록 면허가 없어 석면해체를 처리할 수 없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17,31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36,013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136,013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사업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울진군 ○○○○○사업소에서는 “□□ □□□□□ 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7. 10. 26. ‘■ ■ ■ ■ ■ ■ (주) ☆ ☆ ☆’과 계약하고, 2019. 10. 2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터파기 및 잔토처리 관련

본 공사에서 축구장 및 야구장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포장(29,327㎡)은 전체 부지에 대한 토공이 완료된 후 시공되는 공종으로, 전체 토공에 대한 수량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인조잔디 포장(29,327㎡)을 위한 터파기 및 잔토처리는 불필요함에도, 터파기 및 잔토처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토공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됨에 따라 공사비 68,08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2. CCTV검사 및 수밀시험 관련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05.22.)에서는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 공사시 CCTV검사 및 수밀시험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분리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 하였다.

그런데도 본 공사에서는 하수관로의 품질관리를 위한 CCTV검사(2,418m) 및 하수관거 수밀시험(21개소)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비 13,81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81,89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81,89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사업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울진군에서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

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울진군 □□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 ◇◇관로 정비사업(2단계) 외 1건에 대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매 회계 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하는 내용을 표기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울진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체결한 울진군 □□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 ◇◇관로 정비사업(2단계) 외 1건에 대한 위·수탁협약서에는 “군수가 이사장에게 지급한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군수가 지급한 사업비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수탁협약을 하여 관련법에 의한 매 회계 연도가 종료된 때에 해당연도 이자반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위·수탁협약서 작성을 잘못 하였다.

그 결과 울진군 ◎◎◎사업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울진군 □□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 ◇◇관로 정비사업(2단계) 외 1건을 추진하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대행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함에도, 정산 미 실시 및 사업비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이자 267,572천원을 반납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위수탁사업 정산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미반납 이자 267,572천원은 회수조치하시고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울진군 □□□□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진군 ○○과에서는 “울진군 □□□□ □□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7. 6. 22. ‘□□□□□□(주) ☆☆☆’와 계약 하고 2018. 3. 13.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14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과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지시를 받은 공

사감독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 작성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진군 ◎◎과에서는 2017. 12. 20. 기초 및 토공사 변경, 외벽마감 재 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 등이 작성 및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계약을 시행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치하여 건설시공이 의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이 하였다.

2.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진군 ◎◎과에서는 2017. 12. 20. 설계변경 시 석재 외부마감을

‘스톤코트 외벽단열마감’으로 변경하면서 석재 외부마감 외 잔여 외부마감인 ‘드라이비트 외벽단열마감’을 면밀한 검토나 특별한 사유없이 고가의 ‘스톤코트 외벽단열마감’으로 변경하여 11,55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초 잔토를 20km 거리에 있는 사토장에 15톤 덤프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토장 거리가 7km로 짧아지고 24톤 덤프로 바뀌어 운반비 9,141천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있고, 1층 필로티 주차장 보 밑에는 불필요한 알루미늄 천장재 6,787천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공사비 15,928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2018. 2. 2.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3.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05%)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청구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진군 ◎◎과에서는 준공완료일 3일 전인 2017. 12. 20.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수불 및 연계공종과의 공조 고려를 사유로 80일간의 계약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하였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부당한 사유를 들어 80일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 ■■(주) ☆☆☆에게 관계규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73,400천원(1,834,998천원 × 80일 × 0.05%)을 납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53,529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